

## 건축허가 제한 공고

금천구 시흥1동 871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(선정)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,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, 「건축법」 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등 제한(변경)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3일

금천구청장

### 1. 건축허가 등 제한

가. 제한목적 :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(선정) 내 건축행위로 인한,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,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실시 하고자 함

나. 제한근거 : 「건축법」 제18조제2항

다. 제한기간 :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(단,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) ※변경지정면적의 제한기간은 변경없음

라. 제한지역 : 금천구 시흥동 871번지 일대

(단위 : m<sup>2</sup>)

| 자치구 | 위치       | 구역면적   | 변경 지정<br>면적 <sub>(가)</sub> | 신규 지정<br>면적 <sub>(나)</sub> | 금회 지정<br>고시 면적 <sub>(가+나)</sub> | 비고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금천  | 시흥동871일대 | 88,326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| 8,985                      | 8,985                           | '22년 선정<br>(구역확대) |

※ 기 지정면적(m<sup>2</sup>) : 2022년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으로, 건축허가제한 지정된 면적

[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28호(2023.1.17.)]

마. 제한대상

#### 1) 제한대상

가) 「건축법」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

나)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

다) 「건축법」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(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)

라) 「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

마)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

#### 2) 제한제외 대상

가)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(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)

나) 「건축법」 제14조에 따른 재축, 대수선

다) 「건축법」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

라) 「재난안전관리기본법」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

단,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

※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: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,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

## 2. 지형도면 : 붙임 참조.

□ 붙임 : 지형도면